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경기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공익활동’ 긴급 지원사업
사업수행단체 공모 안내**

2020. 5. 19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코로나19 재난 극복 공익활동 긴급 지원사업 공모 안내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경기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공익활동' 긴급 지원사업

경기 시민사회가 연대의 정신을 발휘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코로나19 재난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함께하는 공익활동'을 긴급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함.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경기 시민사회 참여 확대
-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경기 시민사회의 창의적 공익활동 발굴, 지원
- 재난 극복 공익활동 지원 시범모델 구축

2. 지원근거

-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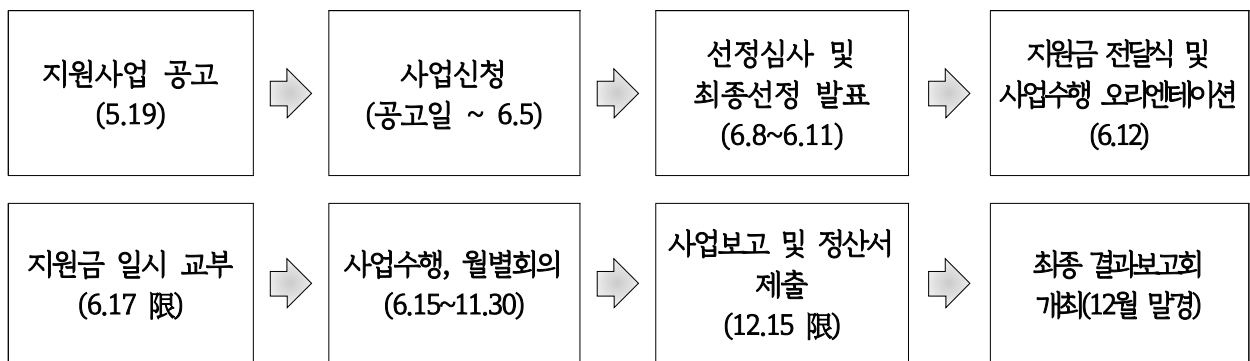
- 사업명 :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경기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공익활동' 긴급 지원사업
- 사업대상 : 경기도 소재 시민사회단체
- 사업내용
 - 경기도 내에서 실현가능한 코로나 19 재난 극복 긴급 공익활동 지원
 -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해 경기도 내 시민사회단체가 기획한 긴급 공익활동 프로젝트(사업내용, 사업방법 등은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함)
 - 실 사업 수행기간 : 2020년 6월 15일(월) ~ 11월 30일(월)

- **사업결과보고** : 2020년 12월 15일(화)까지(각 사업별 종료 후 15일 이내)
- **지원규모** : 총 58,000천 원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비 보조)
 - 1개 사업당 10,000천 원 이내
- **특이사항**
 - 경기도, 시·군별 시민사회단체 연대 활동 우대

4. 사업추진체계

-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 코로나19 재난 극복 공익활동 지원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집행
 - 사업 운영 및 사업비 처리기준 등 사업수행 지침 마련
 - 사업공고, 사업선정, 예산지원 등 사업운영 추진
 - 선정사업 수행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최종 점검)
- **사업수행단체**
 - 각 개별 코로나19 재난 극복 공익활동 지원사업 책임 수행
 - 사업수행단체 실무자 대표, 센터 월별회의 참석
 - 결과 및 정산보고

5. 세부추진일정



* 세부 추진일정은 지원사업 운영 사정에 따라 추후 조정될 수 있음.

* 특히, 응모사업 수가 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 미달인 경우 재공고 예정

2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접수: 2020.05.19.(화) ~ 2020.06.05.(금) 18:00 까지

2. 신청자격

- 경기도 시·군 소재 공익활동단체(공고일 기준)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경기도 소재 단체임을 입증하는 서류 사본 제출 필수
 - ※ 연대사업인 경우 1개 대표 단체 서류 제출 요망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2. ‘공익활동단체’란 공익성과 자발성에 기초하여 공익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하여, 다만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는 제외한다.

3. 사업내용

- 경기도 내에서 실현가능한 코로나 19 재난 극복 긴급 공익활동
 -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해 경기도 내 시민사회단체가 기획한 긴급 공익활동 프로젝트
 - 사업내용, 사업방법 등은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함.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1. ‘공익활동’이란 경기도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 지원제외
 - 중앙부처·도·시군 등으로부터의 보조금이나 민간재단 기금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성격(사업내용, 범위, 대상 등)의 공익활동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예정인 사업은 지원에서 제외됨.
- 특이사항
 - 경기도, 시·군별 시민사회단체 연대 활동 우대
 - 코로나19 재난 극복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수행단체 실무자 대표는 반드시 월별회의에 참석해야 함(매월 사업추진현황 공유 및 상호 연대활동 협의, 사업수행 개선사항 협의 예정).

4. 사업수행기간

- 실 사업수행기간: 2020년 6월 15일 ~ 11월 30일
- 결과보고 및 정산: 2020년 12월 15일 까지(각 사업별 종료 후 15일 이내)

5. 지원규모: 1개 사업 당 최대 10,000천 원 이내

- 최종 지원사업 수 및 사업별 예산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 총 예산 한도 내에서 심사 후 조정, 확정 예정
- 지원금은 프로젝트 사업비로 전액 사용해야 함. 단, 신청금액 중 사업 담당자 인건비는 신청금액의 20% 미만 책정 가능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예산편성 계획이 있는 경우 기재
- 지원조건: 자부담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 예산작성 시 유의사항
 -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예산편성 기준표>를 참고하여 예산 수립(지원신청 매뉴얼에 수록)
 - 연대활동의 경우, 1개 대표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운용

6.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접수처: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대표 이메일 gggongik@naver.com
- 신청서식은 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gggongik>)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후 pdf 파일로 만들어 제출(서명란 확인 필수)
- ※ 신청서식 별첨 참조
- ※ 세부사항은 지원신청 매뉴얼 별첨 참조

7.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단체소개서(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및 연대단체 소개서) 1부.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단체입증서류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 유의사항
 - 심사과정에서 사업 평가를 위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pdf파일로 저장하고 단체명의로 한 묶음으로 만들어 제출(파일명: 코로나재난극복_대표단체명.zip)

8. 선정심사

1) 심사위원회 구성(총 4인)

- 공익활동 전문가인 외부위원 참여

2) 심사일정

구분	일자	내용	비고
적격심사	2020.06.08	신청 적격여부 심사	센터
서류 및 대면심사	2020.06.09.~06.10	사업계획서 등 서류심사 및 대면심사	심사위원회
최종선정 발표	2020.06.11	센터 블로그 공고	

- ※ 대면심사 구체적인 일정은 신청단체에 개별통보 예정
- ※ 대면심사 시 신청단체가 요청할 경우 프리젠테이션 가능

3) 선정기준

○ 수행단체역량, 사업내용, 예산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분야	심사항목	배점
사업주체역량	• 책임성, 연대활동여부 각 10점	20
사업내용	• 긴급성, 공익 적합성, 사업의 독창성, 실행가능성, 지역자원연계성, 파급효과 각 10점	60
예 산	•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20

9. 지원금 전달식 및 사업수행 오리엔테이션

- 1) 일 시: 2020.06.12.(금) 오후 2시
- 2) 장 소: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나눔 대회의실>
- 3) 내 용: 지원금 전달식, 사업수행 운영지침 교육, 선정 사업 공유 및 상호 협력 방안 논의, 월별회의 일정 확정, 사업계약 체결

10. 지원금 교부 및 사업보고

- 1) 지원금 지급일시: 2020.06.17.(수) 이내
 - 사업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지원금 일시 지급 예정
 - 사업수행단체의 교부신청공문,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지원금 전용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접수 후 교부결정 및 지급
- 2) 사업보고
 - 월별보고: 사업기간 중 매월 20일까지 센터 서식에 준해 보고하고 사업수행단체 실무자 대표 월별회의에서 상호 사업 공유 예정
 - 최종 결과보고: 2020년 12월 15일까지(각 사업별 종료 후 15일 이내) 센터 서식에

준해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를 작성하여 각종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 사업 결과보고회: 2020년 12월 말경 개최 예정. 각 개별 사업성과 공유 및 평가

11. 유의사항

- 전체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수행단체로 선정된 후 인건비를 보조받는 실무책임자는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교체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신청서상의 기재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허위사실 확인 시 지원취소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단체의 책임임.
- 심사 후 사업계획과 예산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선정단체는 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한 조정사업계획서로 교부신청을 해야 함.
- 제출된 신청자료는 사업수행단체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사업 평가 및 사업수행단체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후 사업수행단체의 귀책사유에 의해 사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교부된 지원금을 전액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향후 일정기간 센터 지원사업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2. 문의처: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성장지원팀 070-4156-4869~71